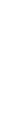
###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





2024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서

☞ 병무청

202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서





7-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

7-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.

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
3-1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

3-2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3-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	05	<b>04</b>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? 28
<ul><li>□1 편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?</li><li>□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</li><li>□2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</li></ul>	06	<ul> <li>4-1 당연전직,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</li> <li>4-2 '23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변경됩니다.</li> <li>4-3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</li> </ul>
02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?	10	4-4)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2-1)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		<b>05</b>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나요? 36
<ul> <li>2-2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</li> <li>2-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</li> <li>2-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</li> <li>2-5 대학원장(지도교수)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:</li> </ul>	겨오	5-1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 5-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	<b>о</b> Т	06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? 42
2-6 전문연구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'권익보호 상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	금관'	6-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. 6-2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
03 출장·파견은 어떻게 가나요?	20	<b>07</b>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 46
		7-1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# 목차

8-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 52

62

8-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D8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?

8-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
### **09**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 58

- 9-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.
- 9-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### 10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?

- 10-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.
- 10-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.
- 10-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### 11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 68

- 11-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.
- 11-2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

# 박<mark>사과정</mark>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

# 편입은 <mark>누구나</mark> 할 수 있나요?

•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대학원 (과학기술원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이라 함)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. (단, 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)

- 1-1 편입대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-2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### 1-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 복무기간은 1-2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자연계대한원 박사한위과정(석·박사 통한과정 포함)을

### 수료한 사람 \_\_\_\_\_

>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

###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-

》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연계대학원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

### 병역지정언체(자연계대한원의 연구실)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복무 \_\_\_

》다만. '23년 1월1일이후 편입자부터는 편입일이후 2년이내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 됩니다.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.

### 편입대상자 선발 ----

-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매년 배정된 인원의 범위 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별도 선발전형(TEPS. 출신 대학원 성적, 3급 이상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취득)으로선발하여 편입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원은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 중 선발하여 편입 →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편입 대상자 선발, 수료 후 전문연구요워 편입

#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?

- 2-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2-2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
- 2-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- 2-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
- 2-5 대학원장(지도교수)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꼬해야 합니다.
- 2-6 전문연구요원 권의보호를 위한 '권익보호 상담관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대학원 (과학기술원 포함하며 이하 대학원이라 함)에서 허가된 연구 분야와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.
-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편입당시 대학원에서 근로시간 중 승인받은 업무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면 편입취소 및 고발되므로 대학원장(지도교수)이 위법·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특히,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편입당시 대학원에서 허가된 연구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(3년 이하의 징역)을 받게 됩니다.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보충역 대체복무자로서 일반 박사학위과정 학생과구별됩니다.

### 2-1 할수있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

### 근로시간은 2-2 정해져 있습니다.

###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할 수 있는 일 \_\_\_\_\_

- > 편입 당시 대학원에서 허가된 연구분야(전공분야)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
- ※ 전직, 파견, 출장, 국외여행 등으로 지정된 연구장소를 벗어날 경우 에는 승인, 신상변동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
  - \*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
    - 대학연구기관(과학기술원 포함)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따른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
    - 자연계대학원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 을 하는 경우

### 1일 근로시간 : 8시간 -----

> 09시까지 해당 대학원의 승인받은 연구실/실험실에 출근하여 18시까지 허가받은 분야에 성실히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

### 주 40시간 유연근무 가능

- 》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. 이 경우 1일 복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. 복무시간이 주 40시간에 모자란 경우 누계 8시간을 무단결근 1일로 계산함
- >> 1일 근로시간 산정 시 중식 및 석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중식 시간은 11:00~13:00 사이의 1시간. 석식 시간은 18:00~20:00 사이의 1시간으로 한다.

# 2-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
#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-4 처벌을 받습니다.

### 함께 할 수 없는 업무

- 》 민법·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·감사·상무·전무 등 임원
- >>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, 영업 등 다른 업무
-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교원

### 함께 할 수 있는 업무

- >>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
  - ※근로시간 이후라도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영리활동은 엄격히 금지됨

### 개인 영리활동 금지 \_\_\_\_\_

>>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 금지

###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.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음 ---

〈대학원장의 지시에 의거 부득이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〉

ON		처리기준	
유형 내용		위반기간	의무자
1. 편입 당시 병역지정	가. 전직·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		연장 복무
업체가 아닌	나,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	3개월 이상	연장 복
다른 업체	교육 훈련, 출장, 파견근무를 한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경고
근무	경우	1개월 미만	시정
2.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	가. 가. 편입당시의 연구분야 외의 분야(사무직, 영업직 등 다른 분야)에 근무하게 하면서 근무를 겸하여 시킨		연장 복목
아닌 분야 근무	나.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	3개월 이상	연장 복모
	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게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경고
	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	1개월 미만	시정
3. 겸직금지	병역지정업체의 이사·감사 등 임원을	1개월 이상	연장 복
규정 위반	경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·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	1개월 미만	경고
4. 수학규정 위반	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		연장 복덕
	가.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		편입 취4
5. 동일사항 반복 위반	나.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		연장 복
	다.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

<sup>\*</sup> 병역지정업체장 : 자연계대학원장, 과학기술원장

<sup>\*</sup> 편입당시 해당분야 : 박사학위과정 연구분야

# 2-5 대학원장(지도교수)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### 의무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-

》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 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###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>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
- 》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
- >> 병무청 홈페이지, 전화, 서신 등 모든 매체 활용 가능

### TIP

### 복무위반행위 신고화면 들어가기

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: http://www.mma.go.kr

⇒ 병무민원 → 민원안내 → 국민신문고 → 신고 및 제보 → 신청

### 실태조사관 신고조사 -

- >> 보안유지 조사 → 신고자 신분상 불이익 방지
- ≫ 신고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태조사 →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

### 신고조사 결과처리 -

》실태조사 결과 업체(대학원장)가 고발, 경고,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,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책임이 면해 집니다.

# 2-6 전문연구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'권익보호 상담관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고충상담 절차

- 》 전문연구요원이 권익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
  - ▶ 해당 병역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연락하여 권익침해사례 설명
  - 권익보호상담관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「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·처리부」를 관리하고,
  - ▶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(필요시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)하여.
  - ▶ 권익침해가 사실대로 확인될 경우 화해, 전직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함

### 병역의무자 사후 지원

》 고충삼담을 신청한 자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, 권익보호상담관은 대면·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

###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

청별	전화번호	청 별	전화번호
서 울	02)820-4563, 4411~2,	충 북	043)270-1352, 1311
지 방 병 무 청	4425	지 방 병 무 청	
부 산 · 울 산 지 방 병 무 청	051)667-5258, 5322~4	전 북 지 방 병 무 청	063)281-3312, 3157
대 구 · 경 북	053)607-6313, 6282,	경 남	055)279-9314, 9255
지 방 병 무 청	6284	지 방 병 무 청	
경 인	031)240-7258~9,	제 주	064)720-3255, 3217
지 방 병 무 청	7287, 7379	지 방 병 무 청	
광 주 · 전 남	062)230-4315, 4254,	인 천	032)454-2313, 2283
지 방 병 무 청	4355	병 무 지 청	
대 전 · 충 남	042)250-4314, 4453,	경 기 북 부	031)870-0810, 0318
지 방 병 무 청	4256	병 무 지 청	
강 원	033)240-6309, 6255,	강 원 영 동	033)649-4216
지 방 병 무 청	6266	병 무 지 청	



18 2023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서 어딘 일을 해야 하나요? 19

# 출장·파견은 수 있나요?

- 3-1) 출장·파건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
- 3-2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- 3-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- 의무복무 중 해당 연구분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.
- 의무복무기간 중 출장·파견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입니다.
- 출장·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및 근무지 등을 포함하는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·파견근무한 경우에는 연장복무처분 될 수 있으니 대학원에서 출장·파견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 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
# [3-1]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

###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3-2 정해져 있습니다.

국내 교육훈련: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

국내 파견근무(출장 포함):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-

### 승인절차 ----

- 3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과 파견근무 : 승인
  - 대학원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파견
- 3개월 미만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,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근무: 신상변동 통보
  - 대학원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
- >> 7일 이내 국내 교육훈련·파견근무: 복무기록표에만 기재
  - 대학원장이 복무기록표에만 기재

### 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과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의 출장
- ※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
- 》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·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

### 출장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>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
- 가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 판촉사원 활동

# 3-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#### 파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-

- >>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
- >>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또는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
- ※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제17조 에서 정한 연구소
- >>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로의 파견
- >>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

### 파견제한 사유

- \*\*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가 4초 이내 혈족인 해당 업체로의 파견
- 》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이 회수되거나 그 해의 인원 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

- >>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
- >> 파견 받은 언체에서 다른 언체로의 파견

### TIP

### 업무처리 사례

- 사례1) 전문연구요원이 출장(월~수). 사내 근무(목). 출장(금~목) 형태로 2주가에 걸쳐 출장을 가 경우
  - ⇒ 일수계산 : ① 사내 근무(목)으로 인해 연속하지 않은 출장임.
    - ② 후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사내 근무 이전 출장(웤~수)은 출장일수 합산 3일, 사내 근무 다음날부터의 출장(금~목)은 출장일수 한산 5일 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  - ⇒ 복무기록표 기재(출장을 2회(3일 출장, 5일 출장) 간 경우로서 복무기록표에 출장 2회 기재)
  - 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시정'(6-가)

- 사례2) 전문연구요원이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
  - → 일수계산: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(4일),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(2일)하여 6일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  - ⇒ 복무기록표 기재(토·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6일간 출장임 복무기록표에 출장 1회 기재)
  - 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시정'(6-가)
- 사례3) 전문연구요원이 월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출장을 간경우
  - ⇒ 일수계산 :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(5일),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(5일)하여 10일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  - ⇒ 신상변동통보(10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)
  - ⇒ 위반시 행정조치: '시정'(1-다)
- 사례4) 전문연구요원이 월~금 출장 후,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는 사내로 출근했다가 다시 오후에서부터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
  - ⇒ 일수계산 : ① 둘째 주 월요일도 출장에 해당함.
    - ②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 일수 합산(5일),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 (5일), 그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(5일) 하여 15일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
- ⇒ 신상변동통보(15일간 출장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)
- 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주의'(1-다)
- **사례5-1)** 전문연구요원이 22년 10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
  - ⇒ 일수계산: ① 훈령 제32조제9항에 따라 10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월
    - ②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12월 2일 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  - ⇒ 신상변동통보(2월 10일(①+②)간 출장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)
  - ⇒ 위반시 행정조치: '경고'(1-다)
- **사례5-2)** 전문연구요원이 22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
  - ⇒ 일수계산:①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일
  - ⇒ 신상변동통보(토·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16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)
  - 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주의'(1-다)

# 다른 곳으로 <mark>옮길 수</mark> 있나요?

- 4=1 당연전직, 승인전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
- 4-2 '23년 편임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변경됩니다.
- 4-3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
- 4-4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 승인전직을 할 수 있으며,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당연전직을 하여야 합니다.
  - \*다만,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의무 복무기간에 미산입(영 제89조2항7호) 합니다.
- 당연전직·승인전직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(승인 전직은 14일) 이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추가로 연장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.
-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한 경우 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.

# 4-1 당연전직,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

###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(당연전직)

- »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
- 》 복무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 취소된경우
- 》 복무중인 대학원이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 할 수 없는 경우

###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.(승인전직)

- >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후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
  - \* 23년 1월 1일이후 편입자부터는 제외 편입일이후 2년이내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 됩니다.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.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- 》 승인신청서: 대학원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 제출
- ※ 준비할 서류
  - ▶ 전직 신청서, 채용동의서(1개월 이내 발행) 등 증빙자료
  - ▶ 대학원장은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,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(전직에 부동의 하는 경우 전직 의견서 첨부)
- > 전직승인
  - ▶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 희망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, 상호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·검토하여 결정

30 2023 박사교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? 31

# A-2 '23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변경됩니다.

#### 한위취득 의무화 -

- >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.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
  - •편입된 날부터 2년(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)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편입이 취소
  -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(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인)

병역법 제37조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그 기간 동안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
- 2 제40주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

-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에따라 다른 병역지정언체로 옮겨 복무
  - 이 경우 "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"란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
  - ▶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 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
  - ▶ 영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
  - ▶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

### 적용대상 ——

'23.1.1. 편입자부터 적용

# /1-3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

#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//-// 경우도 있습니다.

### 다른 언체로 옮기는 대기기간 \_\_\_\_\_

- >> 당연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 (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연장)
  - ※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승인전직 시 대기기간은 14일 이내
- 최초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 (다만.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 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 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 (영 제89조2항7호) 합니다.)되나 추가되는 3개월의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
- >> 전직대기기간 6개월 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편입취소
  - ※ 전직하지 않고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
###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 -

- \*\*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전문연구요원의 다른 병역지정 업체로의 전직('23.1.1.이후 편입자)
- ※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(다만,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)
- 볼무관리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회수 및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 지정업체로의 전직
- >>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함에 따라 핵심 연구 과제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
- >>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로서 연구 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
- 병역지정업체장이 4초 이내 혈족인 해당업체로의 전직
- ※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

# 휴가, 병가를 <mark>갈 수</mark> 있나요?

- 5-1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
- 5-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- 1일 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 의무복무기간 중 「근로기준법」을 준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. 지각, 조퇴 등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.
-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는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초과기간은 연장복무 해야 합니다.



# 5-1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휴가. 병기를 갈 수 있습니다.

- >> 「근로기준법」 규정 준용 또는 학칙 등에 따름
- >>「근로기준법」또는 학칙 등에서 정한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, 그 기간은 연장복무

- 》 1일 기준 근로시간: 8시간(결근 일수는 연장복무)
- >>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)
- ※8일 미만 무단결근 시 무단결근 일수와 무단결근일의 5배수 연장복무
  - ※ 학칙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음

#### 지각 조퇴 \_\_\_\_\_

-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대학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※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
- 》 지각·조퇴·외출(공무상 외출 제외)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
- 》 무단 지각·조퇴·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추가하여 연장복무

- ※ 통틀어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
  - ※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·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
- ※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

# 5-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### 병역처분 변경이라?

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 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,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

###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>>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대학원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.
  - ※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재신체검사 가능함
  - ※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: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역이행안내 → 병무청 지정병원 → 지정병원 조회

#### 구비서류 ----

- 》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
- >> 병무용진단서(병무청 지정병원 발행)
- 》 X-ray, CT,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

###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처리 ————

- 》신체등급 5급: 편입취소하고 전시근로역 처분
- 》신체등급 6급: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
- 》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: 전문연구요원으로 계속 근무

#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?

-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야간 또는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될수 있습니다.

- 6-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.
- 6-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



# 6-1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

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6-2 경우도 있습니다.

ᄉᆕ	レフェ	
수일	[낚시	

》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불가

수학금지 위반처벌 : 편입 취소 또는 연장 복무

### 수학금지 예외

》 야간,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

# 국외여행을 **\*\*** 수 있나요?

- 7-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- 7-2 국외이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7-3 국외여행하가 위반 시 편인이 취소됩니다.

-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을 위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의무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이며,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-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 하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

# 7-1 국외여행하기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.

#### 허가대상 \_\_\_\_\_

》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, 국외출장 등

### 허가신청 및 기간 \_\_\_\_\_

- >> 관할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 제출(병역지정업체의 장 추천)
- 》 허가기간: 모두 합하여 1년
- 》의무복무 인정기간: 모두 합하여 3개월
  - \*'15.7.1.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('15.6.30. 이전 편입자는 종전규정 적용)

# 7-2 국외여행하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### 인정범위 \_\_\_\_\_

》 해당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, 기술연수,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

#### >> 공동연구

- 계약당사자 : 국외 외국기업, 외국 연구기관
- 계약형태 : 공동연구 계약/협약, 기술협력 협약
- 구비서류 : 공동연구계약서/협약서,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

### » 기술연수

- 계약당사자 : 국외 외국기업, 외국 기관
- 계약형태 : 기술도입 계약, 기술협력 협약
- 구비서류: 기술도입계약서, 기술협력협약서, 연구장비 도입계약서(기술연수사항 포함된 경우) 사본 1부

#### ※ 기술지도

- 계약당사자: 국외 제품·기술수입기업. OEM 외국기업
- 계약형태 : 기술수출계약, 기술협력협약
- 구비서류: 기술수출계약서, 기술협력협약서, 제품수출 계약서(기술지도사항 포함된 경우) 사본 1부

#### 인정요건 \_\_\_\_\_

- >> 연구내용: 관련업무와 일치여부
- 》 경비부담: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부담(개인부담은 복무기간 불인정)
- 》 연구성과 :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소유(개인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)
- 》 계약당사자: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해당 국외연구기관의 장(연구요원과 국외연구소 직원 등의 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 기간 불인정)

# 7-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.

### 행정처분 대상(허가위반 사항)

- 》국외여행(연장)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 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
- 》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

### TIP

### 공동연구·기술연수·기술지도 국외여행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

- 여행목적 : 공동연구, 기술연수,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
- 병역사항:35세(군 전공의수련과정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)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을 것
- 해당분야 : 연구·연수·지도 내용이 전문연구요원의 해당(전공)분 야와 관련성
- •경비부담 : 공동연구의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공동부담원칙
  - \*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
- 연구성과물 소유권 :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 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
- \* 전문연구요원 개인 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
- 공동연구기간 및 계약(협약)유효기간 확인
- 협약 체결당사자: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 관의 장
   \* 전문연구요원과 교수등 개인가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가 불인정

### 행정처분내용

> 편입취소 및 고발

### 공동연구 계약서(견본)

① 연구과제	0000000
<ul><li>② 연구내용</li></ul>	1.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국○○○와 한국○○○은 ○○라는 목적을 위하여 양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공동연구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. 연구프로젝트 기간 연구프로젝트는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○년 ○월 ○일 까지 진행한다.
③ 경비부담	미국○○○와 한국○○○연구기관은 연구프로젝트와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미국○○○은 ○○을 부담하고 한국○○○은 ○○을 부담한다.
④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권	미국○○○와 한국○○○ 연구기관은 이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로 한다.
⑤ 병역지정 업체의	의 장 (서명), ○○○ 연구기관장 (서명)

※ 계약서 형식은 연구기관별로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복무 인정 심사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다만, 계약서상에 ① ~ ⑤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복무인정 심사가 가능합니다.

50 2023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 51

# 군사교육소집은 <mark>어떻게</mark> 받나요?

- 8-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
- 8-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8-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
-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군사교육 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- 군사교육소집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.
- 질병,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 교육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

# 8-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

###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.

- > 편입한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
- >> 편입일자가 빠른 순,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
  - ※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 활용 가능 (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 http://www.mma.go.kr) → 병무민원 → 전문/산업 → "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일자 본인선택" 화면)

###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※ 전직대기 중인 경우(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, 잔여의무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가능)
- >> 국외근무중인 경우,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

### 군사교육소집 제외 및 미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>>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

- 》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
- 》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
  - 가.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 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
  - 나.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사람
  - 다.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
  - 라.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
- 》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등에서 기본군사훈련(15일)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
- ≫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

### 8-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함 수 있습니다.

### 군사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

>> 병무청 누리집(http://www.mma.go.kr) → 병무민원 → 전문/산업→ 전문/산업/승선 군사교육소집 일자/부대조회

### 군사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질병, 심신장애, 주요업무 수행
- 》보인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
  - ※ 연기원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

# 8-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
###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. -

- 》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
- >>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 (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)

### 군사교육소집 중에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(퇴영)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》 훈련 기간 중 직계 존·비속이 사망한 경우
- \*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인건 되는 경우
- >>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
- >> 그 밖에 군사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



### 참고사항

-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의무복무 중 편입이 취소 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.
- •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 시킬 수 있으며 퇴영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 합니다.
-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만료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합니다.
-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(기초군사훈련)기간 중 입게 된 부상·질병·또는 장해(군인사법에 의한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)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 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됩니다

56 2023 박사관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서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반나요? 57

#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•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고, 의무복무 기간 계산은 편입일자 부터 포함하며 의무 복무 중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- 9-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.
- 9-2 해당분이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

### 9-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.

#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9-2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### 의무복무기간 계산 -

>>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산입

###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유

- >> 휴직(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·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 함) 또는 정직 기간
- >>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(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) 또는 모두 합하여 3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
- >> 전직대기기간 3월을 초과하는 기간
- >>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연장복무토록 결정된 기간
- >>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(5배수 연장복무)
- >>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
- ※ 기타 결근기간 등

#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?

- 10-1)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.
- 10-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.
- 10-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를 수 있습니다.

-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해당 대학원의 해당 분야에서 연구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.
-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의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.



# 10-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.

# 편입이 취소되면 10-2 병역의무부과 됩니다.

#### 취소사유 ----

- 해당 대학원의 해당분야에서 연구복무하지 아니한 경우
- »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
- >>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>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
- >> 의무복무기간을 35세(의무사관후보생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37세)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
- >> 전문연구요원이 수학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》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
- 》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제적·중도포기 등 과정에서 제외된 경우
- >> 당연전직 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

### 의무부과 ---

>>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

#### 잔여 복무기간 —

- 》 남은 복무기간은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
- 》계산 방법
  - 현역병 입영 대상

• 사회복무요워 소집 대상

#### 참고사항 -

>>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

#### 복무단초 예외

》 부·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·순직자나 전·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혜택 제외

# [1](1)=[3] 편입취소를 하냈적으로 뒤로 미를 수 있습니다.

### 유보대상(한시적으로 뒤로 미뤀 수 있는 대상)

>>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람

#### 유보절차

-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
- >> 구비서류: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 서류

### 유보결과 처리

- >> 적법,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: 편입취소 후 병역의무부과
- 》위법,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: 복직 또는 전직



###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

-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편입취소 유보워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🦠 편입취소

# TIP

### 유의사항

- •화해의 경우 :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전문연구 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, 다만, 업체장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화해한 경우 구제신청 소요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.
- •취하의 경우 : 취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워칙 단. 업체와 의무자가 합의하여 복직을 전제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 :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

#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

- (11-1)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.
- 11-2 에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- 전문연구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.
- 「병역법」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이므로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동원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
- 다만, 예비군 관련방침 상 동원예비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일반예비군훈련을 받게 됩니다.



# 11-1 에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.

# 에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11-2 어떻게 확인하나요?

### 훈련대상 및 시간

(단위:시간)

구분			계	동원 훈련	동 원 미참자 훈 련	기본 훈련	작계 훈련	예비 시간
{	닌규 전약	격자(간부/병)	160					160
		동원지정자	160	2박3일				132
野0	1~4 년차	동원미지정자	160		4일 (32H) 또는 2박3일			128 (132)
	5~6 년차	동원미지정자	160			8H	12H	140
	7~8년차		160					160
	1~6	동원지정자	160	2박3일				132
간 부	년차	동원미지정자	160		2박3일			132
	7년차~연령정년		160					160

### 예비군복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, 인터넷 홈페이지.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. ——

> 전화문의

국방부: 국번없이 1577 - 9090

병무청: 국번없이 1588 - 9090

>>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

예비군 홈페이지: www.yebigun1.mil.kr

- 1. 지역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나의 훈련정보, 훈련신청/연기/보류/해소와 전화번호 등 안내
- 》 병무청 홈페이지: www.mma.go.kr
  - 1.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 확인 병무청 누리집 → 병무민원 → 동원/예비군 → 병력동원훈련소집 → 동원훈련 일자/교통편 조회
  - 2. 동원훈련 관련 안내 병무청 누리집 → 병역이행안내 → 예비군편성/병력동원 → 병력동원훈련소집

# 산업지원업무 제도 상담 전화번호

청별	주소	우편번호	전화번호	FAX
서 울 지방병무청	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	07360	02)820-4492, 4494, 4496	02)820-4151
부산·울산 지방병무청	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	48208	051)667-5238, 5257~9	051)667-5123
대구·경북 지방병무청	대구 동구 동내로 63	41069	053)607-6256 6281~5	053)607-6250
경 인 지방병무청	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	16440	031)240-7258, 7379,7281~4	031)240-7523
광주 · 전남 지방병무청	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	61489	062)230-4253~4, 4355	062)230-4293
대전·충남 지방병무청	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	34944	042)250-4256	042)250-4127
강 원 지방병무청	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	24342	033)240-6255, 6266	033)240-6260
충 북 지방병무청	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	28653	043)270-1351~2	043)270-1370
전 북 지방병무청	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	55033	063)281-3143, 3253	063)281-3300
경 남 지방병무청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	51439	055)279-9254~6	055)279-9387
제 주 지방병무청	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	63219	064)720-3255, 3217	064)720-3260
인 천 병 무 지 청	인천 미추 <del>홀구</del> 노적산로 76	22205	032)454-2284	032)454-2417
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	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	11642	031)870-0253, 0810	031)870-0358
강 원 영 동 병 무 지 청	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5	25590	033)649-4216	033)649-4280
병 무 청	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	35208	042)481-2813, 2818	042)481-2819


이 안내서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향후 규정개정 등 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이 안내서는 「산업지원 병역일터」 사이버 교육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)



병무민원 상담소: 1588-9090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: www.mma.go.kr 산업지원병역일터 http://work.mma.go.kr (복무관리포털 및 구인구직 시스템)